

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8. 2. 19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8년 2월 11일

. 회부일자 : 1998년 2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5회 임시회

. 제2차 내무위원회(1998. 2. 19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박만순)

가. 제안이유

'97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도세의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 세율, 납기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완 규정하며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가. 납세자권리보호 관련규정 신설

(1)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

- 도지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·고시하고,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또는 세무조사 시 교부하도록 함(안 제6조)

(2) 수정신고 납부제도

-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·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, 건설자금의 이자계산,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, 신고납부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장부 기장일, 법원의 확정판결일 등 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 또는 초과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와 환부이자 는 배제 하도록 함 (안 제7조)

(3)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등

- 현행 충청북도세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도세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
- 도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되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내부위원인 공무원은 도지사가 지명하고, 외부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공인회계사·세무사·감정평가

사, 대학에서 법률학·회계학·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
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(안 제8조)

나. 도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 정비

(1)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조정

○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('97. 10. 1)에 의거 지방세심의
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5인이상 20인이하 및 분과위원회의
위원수를 6인이상 10인이하에서

⇒ 각각 45인이하 및 15인이하로 규정함(안 제9조 제3항)

(2)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확대

○ 천재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에 대한 기한의 연장을
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기한의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

⇒ 6개월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.

(안 제12조 제2항, 제3항)

(3)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보완

○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 취득세과세
대상 물건 취득시에는 취득일부터 30일 [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
는 경우에는 6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)] 이
내에 시장·군수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규정에서

⇒ 실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일부터 6월

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(안 제24조)

(4)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중 지하자원에 대한 결정고시일 조정

-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, 과세표준이 되는 광물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<년 2회 결정고시>

⇒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년 1회만 결정고시하도록 함
(안 제75조 제2항)

다. 도세목에 대한 기본적 사항 명시로 조례의 체계화

- 세목별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 세율, 납기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체계 구축

- 현행 조례의 경우 각 세목(취득세, 등록세, 면허세 공동시설세, 지역개발세)마다 규정된 내용이 상이하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,

⇒ 각 세목마다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 세율, 납기등 지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내용을 체계적·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체계 구축

- 취득세 (안 제19조 <납세의무자> , 제22조 <세율>)
- 등록세 (안 제25조 <납세의무자> , 제28조 <과세표준> , 제29조 내지 제47조 <세율> , 제48조 <신고납부>)
- 면허세 (안 제49조 <납세의무자> , 제50조 <세율>)
- 공동시설세 (안 제59조 <과세표준 및 세율> , 제66조 <과세기준일 및 납기>)
- 지역개발세 (안 제65조 <과세대상> , 제66조 <납세지> , 제67조 <징수방법과 납기>)

※ 조례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 세율, 납기 등을 도에서 자주적으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,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세목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조례로서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며, 각 세목중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 등은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.

라. 기타 용어 정리

- 관련 개별법령 등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 정리
 - 건설기계 ⇒ 기계장비 (안 제24조)
 - 건설업법 ⇒ 건설산업기본법 (안 제24조)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 건 영)

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세조례의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운영 목적을 명시 하였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, 수정신고 납부제도,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의 위원 자격등의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

-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5인이상 20인이하에서 45인이하로,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이상 10인이하에서 15인이하로 하였고 천재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에 대한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
- 또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에 있어서도 실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중 지하자원에 대한 결정고시를 년 2회에서 년 1회만 결정고시하도록 하는등 도세의 부과 징수를 위한 관련규정을 보완정비 하였으며
- 도세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인 세목별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 세율, 납기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화 하였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수정안 요 지

가. 수정이유

-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도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 구성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

- 제9조③항의 규정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 “45인이하”를 “15인이상 45인이하”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 “15인이하”를 “6인이상 15인이하”로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를 기하도록 함.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제9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③항의 규정에 있어서
 -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 45인이하 ⇒ 15인이상 45인이하
 -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 15인이하 ⇒ 6인이상 15인이하로 함.

7. 심 사 결 과 : 수정동의안 8인중 8인찬성으로 동조례 개정안 제9조 ③항의 규정중 “45인이하”를 “15인이상 45인이하”로 “15인이하”를 “6인이상 15인이하”로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도 원안대로 의결

8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(안)
-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- 수정안 대비표